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연장]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 20.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1. 사업목적

-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에 필요한 해외시장 현장조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활동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현지시장 사업 확대 유도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또는 공장)가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해외사업 논의 초기 단계인 기업
- 자격제한
 -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1년 이내의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는 자
- 허위 또는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3. 사업기간

- 공고 및 접수: '26. 1. 20. ~ 2. 27.
- 사업수행기간: 협약일('26. 3월 말 예정) ~ 10. 31.
- 평가 및 정산: '26. 11. 1. ~ 12. 31. (2개월)

4. 모집규모

- 3개 기업 (기업당 최대 2,500만원 한도 내 지원)

5. 지원내용

- 지원비율: 기업규모에 따른 현장조사 소요비용 차등 지원
 - 총사업비 기준 중소기업(20%), 중견기업(30%) 자부담(현금 또는 현물)
 - 사업비의 제한은 없으며, 지원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비율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 선정·심의 과정 결과에 따라 기업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해외 현지 조사에 소요 되는 직접 비용 *부가가치세 미지원
 - (국외활동비) 국외항공료, 현지숙박비, 현지식비, 현지교통비 등
 - (기술정보비) 현지통역비, 전문가 자문료, 회의장 임차료 등
 - (외주용역비) 현지 에이전트 용역, 수출관련 컨설팅 등(용역·컨설팅 최대 500만원 이내)
 - (장비·재료비) 샘플 제작비, 시험분석비, 운반비, 홍보물 제작비 등
 - (포장·운반비) 포장비, 운반비, 해상운송 및 통관, 현지 운송비 등
 - (해외지사화) 해외지사화사업(산업통상부) 기업부담금 지원(최대 300만원 이내)
 - *사업 추진계획 및 사전 시장조사에 기반한 현지 관계자 면담 또는 현장 샘플링, 시제품 시연 등 현지에서의 구체적 활동비용 지원

6. 추진절차 *사업 추진 중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및 기간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1월~2월	3월	3~4월	4~10월	11~12월
모집공고 신청접수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평가	사업내용·비용 조정 협약체결·보조금 지급	사업 진도관리 ·현장조사, 집행을 ·추진현황, 점검 등	사업정산·보고 최종평가회 최종보고서 제출
신청·접수	사업평가	선정·협약체결	사업관리 및 중간점검	사업완료 및 최종평가

7. 접수 및 제출 서류

- 공고 및 접수: '26. 1. 20. ~ 2. 27.
- 접수방법: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온라인 신청(www.gwisc.or.kr)
 - 누리집 접속 → 알림·참여 메뉴 → 기업참여 → 신청·접수
 - 사업문의: 사업 담당자 Tel: 031-985-0819 / E-mail: son@ggeea.or.kr
- 제출 서류 [붙임 3] *원본대조필 날인 必, 서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8.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 선정방식
 - 공모 후 심사 기준에 따른 심의 선정 [1차(서류심사) → 2차(발표평가)]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자격 기준, 서류 구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발표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발표평가: 발표 15분, 질의·답변 10분
 - *평가시간 및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별도 형태의 자료 발표(PPT, PDF) 등
 - 평가기준

구분	안내 내용
발표 평가 (100점)	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 타당성, 사업 효과성 등 [붙임 1]
가·감점 평가	발표 평가 기준(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추가 반영 [붙임 2]

○ 평가관련(서류심사)

-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된 기업은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관련(발표평가)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 소속의 본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자료 작성안내

구분	안내 내용
PPT 설명자료	제출기한: 평가회 2일 전 / 제출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제출양식: PPT, PDF 원본파일 제출
자료 출력물	제출기한: 평가 당일 / 제출방법: 당일 출력물 지참 제출양식: 8부 지참(A4, 단면인쇄, 가로형 상철 20page 이내, 흑백 자유)

- 평가위원회 구성은 외부 전문위원 포함 구성
- 선정관련
 - 발표 평가 점수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기업 중 가·감점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순으로 선정
 - *단, 해당기업이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후순위 기업 순 선정함
 - *발표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기업은 순위와 별개로 최종 선정에서 제외됨
- 평가일정 관련
 - 서류검토 결과: '26. 3월 초 *검토결과 개별 통지
 - 발표심사 일정: '26. 3월 중(예정) *발표 일정 및 시간 개별 안내(예정)
 - 선정기업 통보: '26. 3월 말(예정)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 게시 및 개별 통지
 - 평가 내용 및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9. 사업진행 관리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체결
 - 협약 시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평가 및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내용 일부 수정 사업비 조정 요구 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보조금 교부를 위한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시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사업 진도관리 및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 점검을 위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요구,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기업은 최종 사업결과의 평가위원회 보고를 통한 성과분석 및 사업평가를 실시 해야 함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예정
 - * 최종 평가 경과 성공/실패 판정 기업 통보
 - 수행기업은 평가의견을 보완한 최종보고서 제출
- 수행기업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사업비의 교부 및 집행, 취소,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및 경기도의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름

- 붙임 1. 선정평가 기준 1부.
 2.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1부.
 3. 제출 서류 및 작성 안내 1부.

- 별첨 1. 국외 여비 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 1부.
 2.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당 지급규정 1부. 끝.

붙임 1

선정평가 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
계획의 적정성 (30)	① 현지시장 사전 조사 정도	10
	② 현지시장 정책과 사업내용과의 연계성 및 시급성	10
	③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능력 (10)	④ 사업수행 기반 확보 (해외분야 전담인력 사업 수행 경험, 재정상태 등)	10
사업내용 타당성 (50)	⑤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합성, 명확성	20
	⑥ 사업 추진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20
	⑦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및 현지 적용 가능성	10
사업 효과성 (10)	⑧ 후속 사업 파급효과 및 시장 확대 가능성	10
합계		100

붙임 2

가·감점 기준

가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 환경신기술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경우 (유효기간 이내 신청)	모두 해당 2 한가지만 해당 1
- 최근 3년 이내 3국(미국, 일본, 유럽) 특허 및 국제규격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경우	모두 해당 2 한가지만 해당 1
- 경기도 내 본사 및 공장의 소재 여부	본사 및 공장이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는 경우 1
- 중소기업 여부	중소기업인 경우 1
- 최근 3년 이내 환경 또는 과학·기술 분야 수상자인 경우 (훈·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 장관상, 경기도지사상(대표, 기업)) - 경기도 지정 우수기업인 경우 (유망중소기업, 경기가족친화일하기좋은기업, 수출프론티어 기업) ※유효기간 이내	1개 이상 1
- 개발 기술의 현지 실용화 보장을 위한 진출대상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서 (발주처 MOU, LOI, Letter 등)가 있는 경우(상대국)	3
-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강의 참석 여부	'24, '25년 강의 참석 완료 후 수료증 제출 시 2 '26년 강의 참석 예정일 경우 ※ 사업 기간 내 수료증 미제출 시 최종 평가 점수에 감점 반영 1
합계	15

* 유효기간: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간의 실적 대상

감점기준

평가항목	배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른 평가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 조회 결과 제출	5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위반 사실 확인시(1회이상) 선정평가 총점(100점)의 20% 감점 적용 ※ 위반사실 조회기간: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최대 20점
합계	최대25

붙임 3

제출 서류 및 작성 안내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서식 1 참고] 1부.
2.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2 참고] 1부.
3.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중소기업 활용 동의서 등 [서식 3 참고] 각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경기도 내 공장 소재 경우) 각 1부.
5.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주관기업의 재무상태 현황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확인원) 각 1부. (국세청 발급)
* 부채비율 1,000% 초과 또는 자기자본비율 10% 미만 경우 서류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
8. 가·감점 항목 증빙서류 각 1부. (붙임 2. 선정평가 시 가·감점 기준 참고)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제재정보 조회 결과 확인서 제출
* 제출 서류는 공고일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원본 제출 불가 시 원본대조필 날인 必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첨부된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제공한 규정 서식으로 제출
-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글자체/포인트는 함초롱바탕, 13pt
- 참고자료를 제외한 사업계획서는 **총 20쪽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파란색 예시와 작성 안내 문구는 삭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서식 1

참가신청서

기업정보	기업명	(국문)		
		(영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번호	
	업종		업태	
	주요생산품			
업무담당자	홈페이지	(국문)		
		(영문)		
	성명		직위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기본사항	사업장 소재지 (주소)	(본사)		
		(제조시설)		
	특허 및 인증	(국내) 특허 건 / 인증 건		
		(해외) 특허 건 / 인증 건		
해외진출 대상정보	진출대상국가/지역	※ 당 사업에 해당하는 현지시장		
	대상기술 또는 품목	※ 당 사업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품목		
매출액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내 매출액	천원	천원	천원
	해외 매출액	달러	달러	달러
1. 당사는 사업참가신청서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감수합니다. 2. 당사는 진흥원에서 정한 선정방식과 사업추진과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선정을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경기도 공무원 혹은 진흥원 소속 직원에게 일체의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으며, 본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귀 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업 선정 취소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4. 따라서 위와 같이 사업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서식 2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계획 요약서

1. 사업개요

업체 개요	기업구분	☐ 중소기업 / ☐ 중견기업	매출액 (2024년도)	(국내) 억원 (해외) 억원
	업태		종목	
사업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생년월일		E-mail	
	부서/직위		전화번호	
사업과제 개요	사업명			
	진출대상 국가/지역		대상 기술 또는 품목	
	발주처		사업규모 (예상매출액)	달러
	사업내용			
신청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6. 3. ~ 10.(8개월)	총소요 예산금액	천원 (100%)
	신청금액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추진경위	○ 사업 추진 배경 ○ 사업 정보 입수 경위 ○ 사업 추진 현황 (사업 정보 입수 후 현재까지 진행상황 등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 추진일정	○ 월별 주요 추진 일정 (현지조사 및 발주처 수의계약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에 따른 기대성과	○ 본 사업을 통해 얻게 될 예상 성과			
후속사업 연계가능성	○ 발주처의 유사사업 발주계획 혹은 유사지역/제품 진출 가능성 등			

2. 사업비 총액(요약)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총소요예산	지원금	자부담	비고
국외 활동비	국외여비 (별첨 1 기준 확인)	국외항공료				현금/현물
		현지숙박비				
	현지교통비	현지항공료				
		현지 대중교통 및 차량임차료				
	소계		0,000	000	000	
현지조사 활동비	기술정보비	현지통역비				
		회의장임차료				
		전문가자문료				
		번역비				
		자료인쇄비				
	외주용역비	현지 에이전트 등				
		수출컨설팅비용				
	장비·재료비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시작품 제작비				
	포장·운반비					
	소계		0,000	000	000	
해외 지사회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				
	소계		0,000	000	000	
사업비 합계			0,000	0,000	0,000	

사업 수행계획서

1. 프로젝트 개요 및 추진 현황

1.1. 프로젝트 개요

- 신청기업 :
- 사 업 명 :
- 발 주 처 : 000(국가명 포함)
- 사 업 비 :
- 사업기간 :
- 발주형태 :
- 사업내용 :
- 위 치 :

(조감도, 노선도, 사업지 등 지도 삽입)

1.2. 추진경위

- 2021.05.
- 2021.10.
- 2022.01.
- 2022.10.
- 2023.07.

<작성 유의사항>

※ 당 사업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진출대상국/지역과의 진행경과에 대해 기입하며, 지금까지 논의사항 중 발생한 문제점도 기입

1.3. 유사사업 수행실적 (신청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해외 수행 실적)

- 2019.05. 000 프로젝트 000제품 납품 (경쟁사 000) 등
- 2021.01.

2. 발주처 정보

2.1. 발주처 개요 (발주처명, 주요 업무, 담당자 정보 등)

2.2. 발주처와의 관계

- 2019.05. 000 사업제안
- 2022.01. 000와 XXX간 MOU 체결 등

3. 본 사업 추진계획

3.1. 사업 목표 (본 지원사업 수행을 통한 달성 목표)

- MOU 체결
- 시제품 납품 등

<작성 유의사항>

※ 사전조사 시 부족한 현지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해 획득할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

3.2. 프로젝트 활동 계획

<작성 유의사항>

※ 현지조사 계획일정/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기업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작성

사업내용		시행범위	시행방법	비고
국내 활동	프로젝트 정보 수집 및 분석	○ ○	현지답사	현지 에이전트 활용
	환경조사	○ 관세, 부가세, 통관, 운송 규제현황 파악 등	온라인 정보검색	
	기타정보 습득	○ 동 사업에 참여한 경쟁(외국/한국)업체 파악		

사업내용		시행범위	시행방법	비고
해외 활동	시장조사	○ 가격/기술경쟁력 조사, 적용기술 적합성 분석 - 입찰 참여 경쟁사 파악 - 경쟁사 가격, 기술정보 수집 - 설비 요구사항 분석, 디자인/강도설계	현지답사 발주처 교섭	외부기술 전문가 활용
	플랜트 현장 환경조사	○ ○	현장답사	현지 통역 섭외
	제품 및 기술 발표	○ ○	발주처 미팅	
	기타정보 습득	○ ○		

-
-

3.3. 추진일정

<작성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기업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입

구분	내 용	2026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기간 이내	현장조사												
	미팅, 발표												
	시장/기술조사												

구분	내 용	2026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종료 후	제안서작성 및 제출											
	MOU 체결											
	중간 보고 및 정산 점검											
	최종협상, 수주, 최종평가회											
	시공, 설치, 정산 잔액 반납											

3.4. 인력투입계획 및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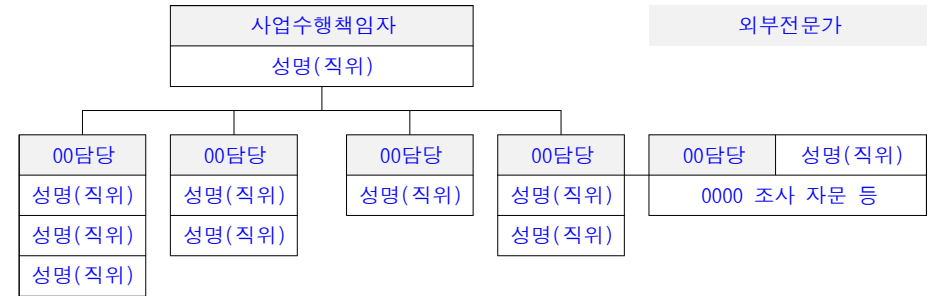
- 인력계획: 사업책임자 및 실무자(담당업무별) 기재

분야별	성명	주요 업무	소속
사업수행책임자	000	· 사업총괄	
00담당	000	· 프로젝트 관련 현황조사 및 분석	
	000	·	
00자문	000	·	외부

- 사업수행체계도 (인력계획을 중심으로 작성)

<작성 유의사항>

- ※ 여비 규정은 투입인력 중 주관기업의 내부 직원에 한해 적용 가능, 외부 인력의 여비지급은 불가, 전문가 자문료 지급만 가능함
- ※ 아래의 내용은 예시이며, 기업의 사업계획에 맞추어 작성



3.5. 외주용역비 사용계획 및 과업지시서, 견적서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

항목	업체명	xx (1)	xx (2)
000 분석		천원	천원
XXX 분석		천원	천원
AAA 제작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작성 유의사항>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

3.6. 현지조사비 사용계획 및 과업지시서, 견적서 (2개 이상의 견적서 제출)

항목	업체명	xx (1)	xx (2)
000 조사비		달러	달러
XXX 조사비		달러	달러
합계		천원	천원

<작성 유의사항>

- ※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삭제

4. 기대효과

4.1. 본 사업을 통한 예상 성과

-
-
-

4.2. 향후 후속사업 연계 가능성

-
-
-

5. 사업비 구성

5.1. 사업비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현금		현물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계		100%				
지 원 금						
민간부담금						

<작성 유의사항>

※ 최대 지원금은 2,50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민간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함

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민간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함

5.2. 비목별 현황 <작성 유의사항> 원화 기준으로 작성 필요

(2026.00.00. 기준, KRW 000 = USD 000)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세세목	세부내역	금액	지원금	자부담	비고
							현금/ 현물
국외 활동비	국외여비	국외항공료	000천원×0명×0회				현금/ 현물
		현지숙박비	000천원×0명×0박				
		현지식비	000천원×0명×0일				
		기타경비	비자발급비, 여행자보험 등				
		...					
	현지 교통비	현지항공료	000천원×0명×0회				
		현지대중교통비					
		현지차량 임차료					
		현지차량 유류비					
		...					
	소계						
현지	기술정보비	현지통역비	(단가)000천원×0명×0회				

조사 활동비		회의장 임차료	(단가)000천원×0일				
		전문가 자문료					
		번역비					
		자료인쇄비					
	외주용역비	현지 에이전트 등					
		수출컨설팅					
	장비· 재료비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시작품 제작비	설비샘플 (단가)000천원×0식				
		...					
	포장· 운반비	시제품 운송비 등					
		소계					
해외 지사화	기업부담금	기업부담금					
	소계						
사업비 총액		현금					
		현물					

<사업비 계상기준>

1. 국외활동비(별첨 1 참고)

- 1) 국외여비: 국외항공료(이코노미), 숙박비, 식비 등은 실소요 경비로 책정하며, 각 상한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을 따름
- 2) 현지교통비: 현지항공료는 이코노미 기준 실소요 경비로 책정하며, 현지대중교통비와 현지차량임차료, 유류비는 합산하여 현지 교통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2. 현지조사활동비

- 1) 기술정보비: 국내에서 개최되는 회의 및 세미나·학회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되지 않음
 - 전문가 자문료: 진흥원 수당 지급 규정에 따름(별첨 2 참고)
 - 현지 통역비, 번역비는 실소요 경비로 책정함 (통·번역사의 여비 지급 불가)(별첨 2 참고)
 - ※ 국내에서 사용한 회의비(식비포함), 학회참가비, 기술도입비, 특허정보 조사비 등 계상 불가
- 2)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및 수출 컨설팅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3) 장비·재료비: 참여기업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판매 중인 시약·재료는 현물로 계상
 - 시작품 등의 외주 제작은 현금으로 계상 가능. 단, 직접 제작 시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는 현물로 계상하고 현물 계상이 곤란한 부분에 한해서만 현금으로 계상(현물가액에 대한 생산·판매 책정가 또는 보유 당시 구입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必)
- 4) 포장·운반비: 포장비, 운송비 등 시작품 등을 운송하기 위한 각종비용

3. 해외지사화비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8호」 참조

2026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기업부담금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4. 내·외부 인력의 인건비 산정은 불가하며, 자부담 및 현물로도 반영 불가함

서식 3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기업의 법외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 또는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외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법외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 공 목 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한 법외반사실 확인
제 공 항 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 공 기 관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도·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 기업의 법외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기업의 법외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 해당 ☐ 비해당)			

2. 법외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외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 음	위반사실 있 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	☐
(법외반사실 확인) 법외반사업 자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 의	부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외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외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에 동의합니다.	☐	☐
법외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	☐

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목록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자 목록

□ 주관사업기관(기업): 0000

연번	소속	직책/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대표자			
		총괄책임자			
		참여인력 (0000)			
		참여인력 (0000)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2026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강의 참석 약약서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추진중인 2026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사업의 기업 선정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2026년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교육 강의에 사업 기간 내 참석하여 수료증을 제출할 것을 약약합니다.

기업(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강의 참여 예정자	추후 강의 안내를 위한 정보기입사항으로 추후 다른 담당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교육일정 ※교육 내용에 따라 1일 또는 2일 과정 진행예정	하반기 예정(9~12월)

※ 해외 현지정보 조사 지원사업 선정 이후 강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최종평가 시 감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귀하

별첨 1 국외 여비 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

구분	산정기준					
국외여비	□ 국외여비 세부기준 (단위: 미 달러화(\$))					
	구분	항공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수석급(부장 이상)	이코노미석	30	가	실비(상한액: 176)	81
	선임급(차/과장)			나	실비(상한액: 137)	59
	원급(대리)이하			다	실비(상한액: 106)	44
				라	실비(상한액: 81)	37

- ※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 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2. 제1호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근무 예정지에서 제1호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별첨 2

수당 및 통·번역료 지급 규정

□ 위원회 등 참석 수당 기준

구 분	기본료 (2시간)	초 과 (시간당)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	200,000원	100,000원
평가, 심사, 자문 등 각종 회의 참석	200,000원	100,000원
사이버위원회 참석	100,000원	40,000원

□ 통·번역료 지급기준

가. 현지 통역료 지급기준

- 현지 통역사에 대한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비교 견적 필수)

	차등요율제 구분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동시통역(1인당) 순차통역	졸업 후 2년까지 경력	500,000원	800,000원	150,000원/시간
	졸업 후 3년부터 경력	600,000원	900,000원	

나. 번역료

-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귀착언어	번역료	비고
모든언어	140원~300원(한국어 원문 자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최소번역료(모든 언어)	10만원	일정분량 이하의 문건일 경우 최소번역료 적용

-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귀착언어	번역료	비고
모든언어	140원~400원(원문 단어당)	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최소번역료(모든 언어)	10만원	일정분량 이하의 문건일 경우 최소번역료 적용